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3.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010.3.22.)제정 및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2012.9.10.)개정에 따른 비상임감사 임명기준에 관한 사항 및 이사회 운영기준을 보완하여 개정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의거 구미시설공단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 감사를 둘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안 제10조제1항)
- 나. 안 제10조제1항 단서 신설에 따라 시 감사담당관을 당연직 비상임 감사로 규정한 관련 항 삭제(안 제10조제4항)
- 다.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회의참석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조항 신설(안 제15조제6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 (2) 「지방공기업법」 제58조
- (3)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단서 신설>	제10조(감사) ① ----- ----- ----- ----- .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을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감사를 비상임으로 할 때에는 시 감사담당관을 당연직 비상임 감사로 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5조(이사회) ① ~ ⑤ (생략)	제15조(이사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⑥ ----- ----- ----- ----- ----- ----- .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겸직 등의 금지)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職)을 겸하거나,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생략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3. 제78조제3항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

⑤ 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 비상임감사 임명기준 개정

- 외부전문가로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감사부서의 장은 제외)이 겸임할 수 있음.